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733호

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
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('25.12.16.)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에 따라 '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' 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26일

서울특별시장

1.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

연번	자치구	구역명(가칭)	위 치	면적(㎡)	권리산정기준일
1	금천구	-	독산동 979 일대	93,990	2025-11-11 (자치구 추천일)
2	금천구	-	독산동 1022 일대	83,203	2025-11-28 (자치구 추천일)
3	강북구	-	수유동 310-15 일대	15,944	2025-11-25 (자치구 추천일)
4	영등포구	-	신길동 90-31 일대	58,162	2025-11-26 (자치구 추천일)
5	성북구	-	정릉동 16-179 일대	42,810	2025-11-17 (자치구 추천일)
6	성동구	-	행당동 300-1 일대	66,276	2025-09-01 (자치구 별도 요청일)
7	은평구	-	신사동 300 일대	30,743	2025-11-27 (자치구 추천일)
8	마포구	-	신수동 250 일대	44,718	2025-11-25 (자치구 추천일)

※ 면적은 참고용으로, 향후 측량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

2. 지정사유

-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지역 주민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에 따라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

3.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 제1항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제

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

※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필지만 기준이 적용되며, 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기준은 자동 실효(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동 실효)

4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※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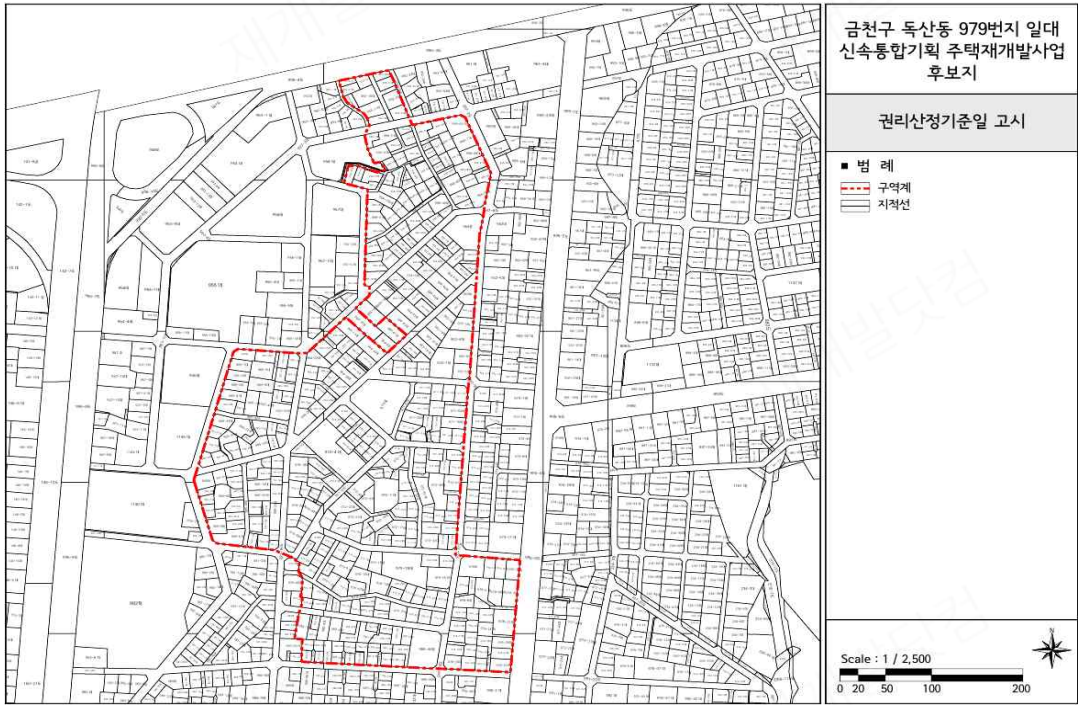
5. 안내사항

○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(☎02-2133-7236)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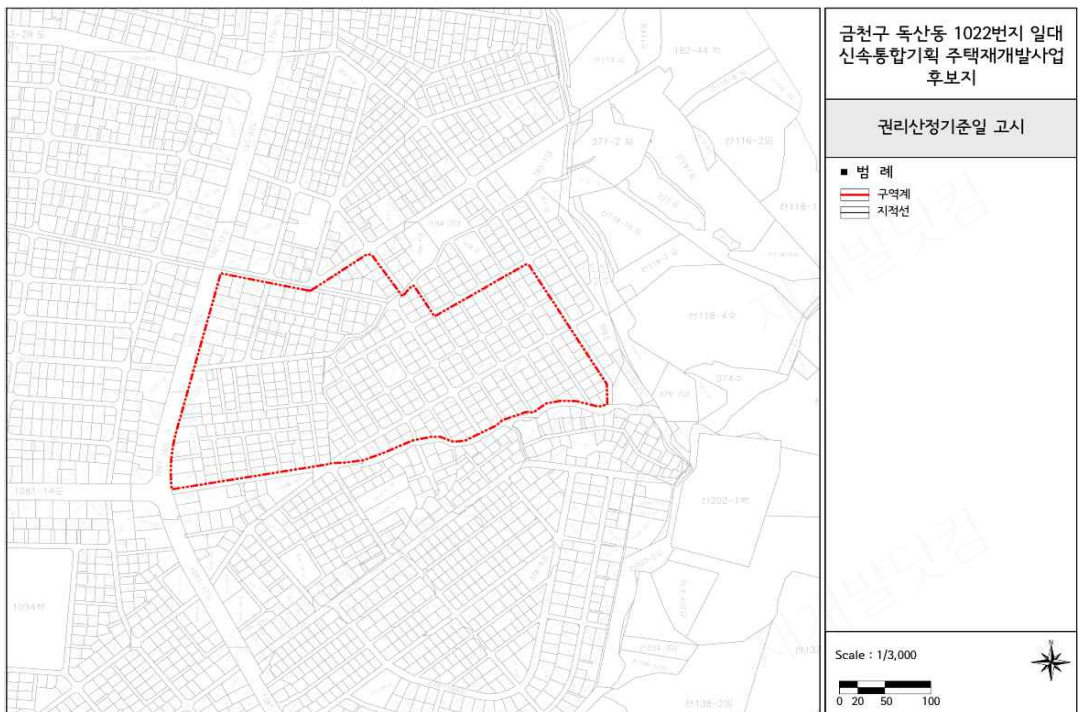
자치구	부서명	연락처	비고
금천구	주거정비과	02-2627-1564	
강북구	재개발재건축지원단	02-901-6839	
영등포구	주거사업과	02-2670-3531	
성북구	도시정비신속추진단	02-2241-2783	
성동구	주거정비과	02-2286-6562	
은평구	정비사업신속추진과	02-351-7744	
마포구	주택상생과	02-3153-9333	

■ 관계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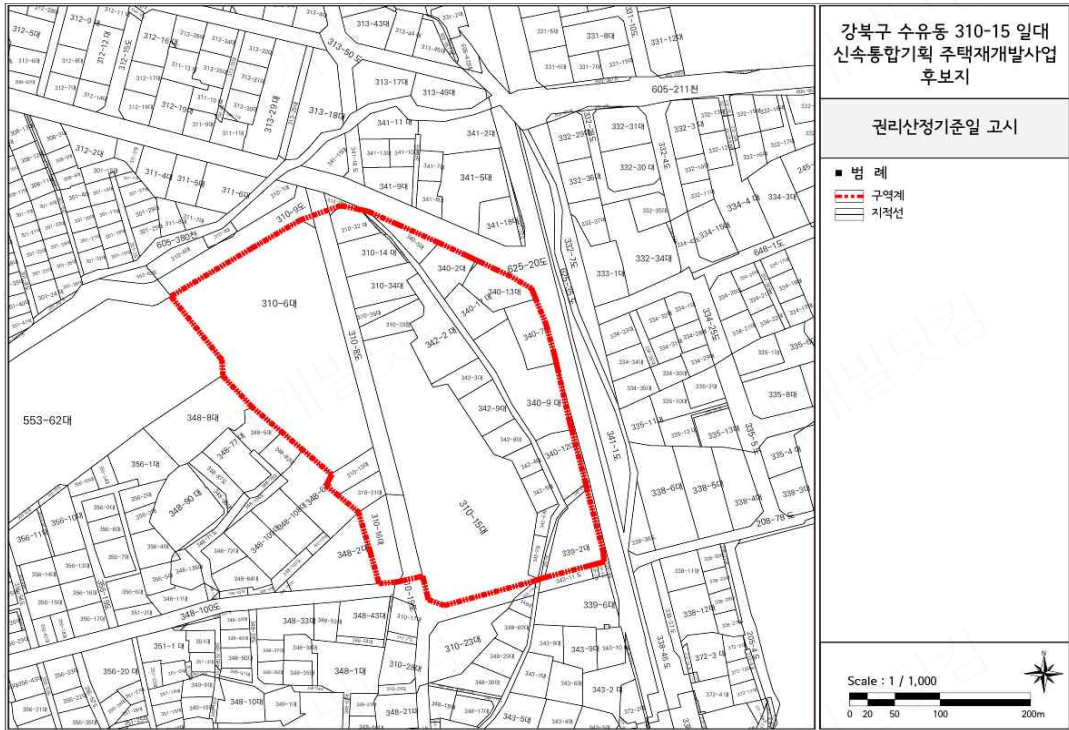
○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



○ 금천구 독산동 1022 일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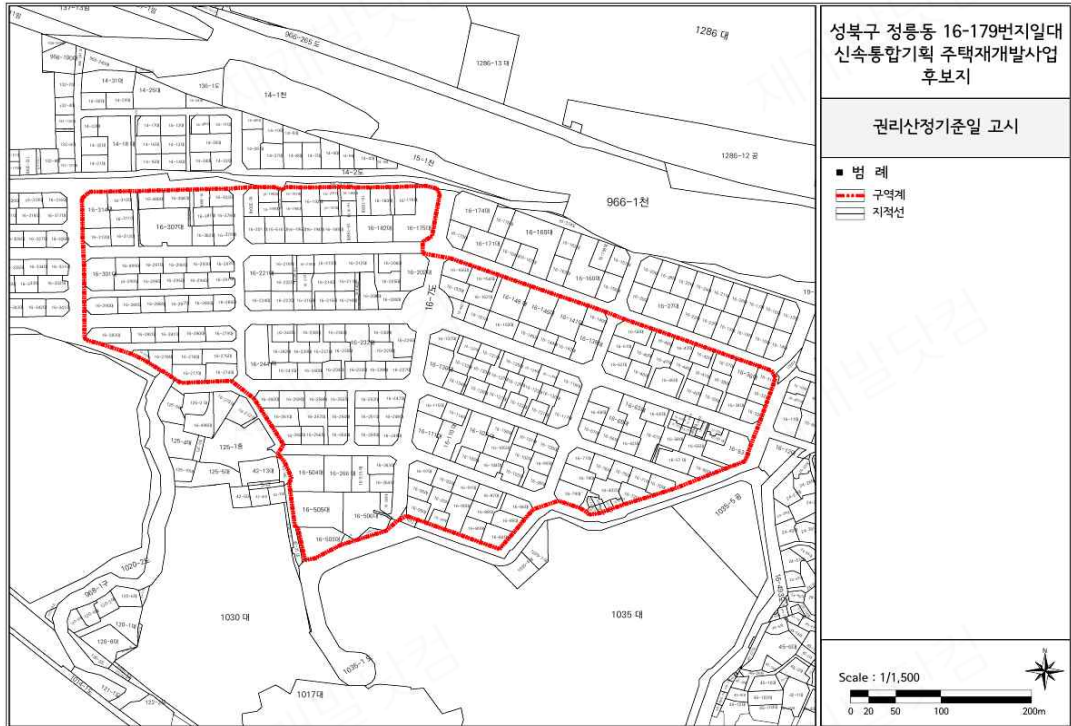
○ 강북구 수유동 310-15 일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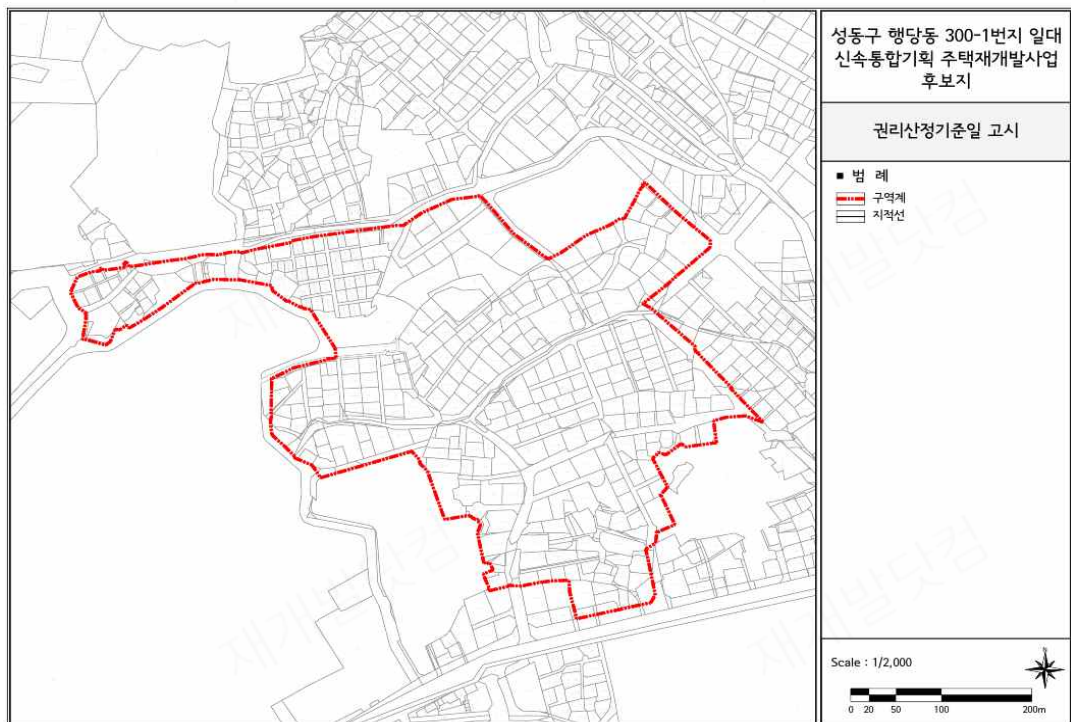
○ 영등포구 신길동 90-31 일대



○ 성북구 정릉동 16-179 일대



○ 성동구 행당동 300-1 일대



○ 은평구 신사동 300 일대



○ 마포구 신수동 250 일대

